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양성진 편집인 최경환 전화 (031)620-2473 FAX (031)620-2989

권두언

2015년, 한국 경찰의 과제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박동균

연구특집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송병호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로 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경감 김병학

세계 인신매매 실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치안활동 강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선

치안현장탐구

학교폭력 예방 “응달샘 보듬이” 활용방안

제주 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경위 이용호

치안정책동향

일본 경찰정책연구센터와

도쿄 토미사카 경찰서 방문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권태형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연구소 소개

2015년, 한국경찰의 과제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 동 균



박 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행복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채택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국민맞춤형 복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구축 등의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4대악을 척결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 지킴이'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에서 경찰은 주로 범죄에 대응하는 중요기관으로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실제 경찰업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과 같이, 경찰의 업무는 그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각 영역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

민들은 과거에 비해 경찰에게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범죄로 인한 결과는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광범위한 범죄피해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찰활동은 단순히 범죄인지와 범인검거 역량을 향상시켜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현대 경찰활동을 보면, 지역사회 거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는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요구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경찰관의 도보순찰과 봉사, 지역사회 조직화, 시민친화적 접촉강화 등이 포함된다. 즉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한 투사'를 넘어서 넓은 의미의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는 사회불안과 치안부재의 불안감과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바, 대한

민국 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의 수호자’로서 경찰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 스스로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치안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범인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생 테러리즘 등 각종 테러발생의 위험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사회 속에서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에 따른 빠른 대응,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에게 봉사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증시된다.

경찰은 국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경찰은 국가권위의 상징이며, 법집행의 힘과 수단, 훈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며, 최상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력 등이 재난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찰 혼자만의 역량으로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 앞으로 각종 재난, 테러,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가장 빠르게 현장을 통제하고 재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예방의 개념보다 대비·대응의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찰력의 49.8%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가 4부제 또는 3부제로 운용이 되고 있어 항상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가나 병가가 제한적이고 교육기회가 있어도 근무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년 4000여 명씩 경찰관을 증원한다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늘어나는 경찰력을 생활안전 분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 112종합상황실, 여성·청소년 관련 인력으로 배치,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내 치안환경을 분석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자체 실정에 맞는 근무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시간대별 112신고건수, 5대 범죄 발생률, 순찰요원 현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찰인력의 운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기대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치안환경은 급변하여 새로운 치안 수요가 발생하지만 모든 치안 수요를 경찰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CCTV 등 시스템적인 접근과 함께 자율방범단체,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상호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연계 및 협업,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하여 자연적 범죄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PSI**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방안 논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 병 호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범죄피해자가 되고 그에 따른 보호대책이 없다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의 여러 원인들 즉 실직,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속의 갈등, 재난, 교통체증 등 여러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보다 더 큰 위협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일 것이다. “어디 어디에서 인체 살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의 범죄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법집행의 사례, 즉 서귀포경찰서의 가·피해자의 불공정한 대우의 경우¹⁾는 국민의 형사사법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한다. 범죄대책과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진 국가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해자·피해자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근대이후 형사사법의 주된 관심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적법절차의 보장에 맞춰져 있었

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소홀이라는 반성으로 20세기 중반이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도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권리장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새로운 정책들에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이 실효성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다양한 법률근거에 산재해 있어 통일성부족, 중복성, 비형평성, 비효율성 등 여러 차원에서 현실적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 유일하게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2004년 경찰청 훈령으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경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에 1차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높은 기대에 경찰조직이 얼마나 부응하는지 검토가

1)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안덕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이모 여인은 2014년 8월 10일 지역 주민 3명으로부터 골프채와 돌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곳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관들이 피해자인 자신만 안덕파출소로 연행하고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사건 현장에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파출소로 연행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본인에게 경찰관들이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구석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에 결박,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거짓말 한다며 풀어 주지 않아 옷을 입은 채로 배변을 봤고 현기증으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온 몸이 배변으로 뒤범벅이 됐다고 한다. “수갑 채운 채 배변까지 막은 경찰... 왜 그랬을까?”, 오마이뉴스, 2014.11.12.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 **피해자문제처리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미국은 경찰에 기반을 두고 범죄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1982년 레이건 정부 산하 대통령위원회에서 경찰의 피해자 처우를 위한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둘째, 신속한 재산환부절차를 실시할 것, 셋째, 사건의 상황 및 수사의 종결을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 줄 것, 넷째, 증인, 가해자 측의 협박,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에 힘쓸 것 등이다.

즉 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문제처리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그들과 그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처리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위에서도 지적인 현실에서 잘 운영되지 못하는 피상적인 기구의 운영이 아니라 전 경찰관들이 정기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하겠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통합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피해자보호 규정은 법률로서의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개별법규로 산재해 있다.

경찰청훈령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규칙,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대통령령으로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들이 법률과 대통령령, 훈령 등 부령에 산재해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통일성 부족과 여러 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현재 시행중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가장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명칭도 보호로 되어 있고,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에 관한 내용은 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양법의 통합운동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운영도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단계부터 구조, 상담, 의료, 피해회복, 구조금지급 등에 관한 절차상 참여방식, 피해 신청방법 등 절차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대책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4년 12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규정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 따로 지원 따로인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

현 제도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은 보호만 초점을 두고 지원은 관여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실제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있는 곳에 재원이 충당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므로 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배당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전담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기구는 경찰청(인

권보호담당관)에만 있고, 산하 관서인 지방경찰청에는 단지 감사관실 소속의 피해자심리전문경찰관(CARE팀) 1~3명만 근무하며, 수사과 소속의 수사1계장이 피해자 대책관(겸 수사1계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 대책관(겸 수사지원팀장), 피해자 보호관(겸 수사과장), 인권보호관(겸 청문감경찰)의 직제는 편제되어 있으나, 모두가 자신의 기본 업무와 피해자보호 업무를 겸직하여 실제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촉하는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청 수사과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피해보호·지원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관련 전담인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사실상 범죄피해보호·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서단위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계’ 혹은 ‘피해자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사무 분장은 ① 피해자 서포터요원 선발·교육 등 관리, ② 수사민원 상담관 업무, ③ 범죄발생 처리 통계관리, ④ 피해자 권리고지제도, ⑤ 민원처리결과 통지제도, ⑥ 수사종결 송치 후 모니터링, ⑦ 치안분석 평가회의 등 피드백, ⑧ ONE-STOP 지원센터 협조업무, ⑨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 관장 등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것이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재원확보의 중요성**

위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재원확보와 그 집행을 설명하였지만 우선, 대부분의 지원센터예산이 정부의 보조금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지원여부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지역마다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최근의 교육정책처럼 미지원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헌법 제30조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4분의 1수준인 것은 너무 소액규모의 국고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40%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국 각 경찰서 단위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무하다. 경찰의 교통단속 범칙금, 과태료 등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재원인 경찰서 단위의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강소영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박경흠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 031-620-2374 (경비) 61-2374
 ● e-mail : webmaster@psi.go.kr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로 본 세계 인신매매 실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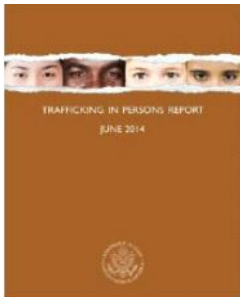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경감 김 병 학

지난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장기 없는 토막 시신이 발견되자, 2년전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오원춘 사건’ 때의 장기매매 공포가 다시금 확산²⁾되었다.

실제로 장기 등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美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찾아보았다.

세계 인신매매 실태



美 국무부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s(TVPA)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전 세계의 인신매매 현황을 수집·평가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대상 국가들을 3등급(Tier 1~3)으로 구분하여, Tier 1은 인신매매 퇴치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국가, Tier 2³⁾는 퇴치노력이 양호한 국가, Tier 3은 인신매매가 심각하나 퇴치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 평가하여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등급(Tier 1)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이란 등은 3등급(Tier 3)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은 2등급, 중국은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국가(Tier 2 Watch list)로 분류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를 「성(性)착취, 강제노동, 노예상태, 장기적출 등에 종속시킬 목적으로 폭력, 사기, 강압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인수, 은닉하는 행위」로 비교적 폭넓게 규정⁴⁾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 현재까지 약 20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도에는 44,700여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인신매매는 주로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⁵⁾할 수 있는데, <표 1> ‘연도별 인신매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검거인원 및 확인된 피해자수가 증가추세이다. 이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법집행력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교통수단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피해자 및 신체 장기의 국가 간 이송이 쉬워지면서 전체적인 Trafficking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도별 인신매매 관련 통계

YEAR	PROSECUTIONS	CONVICTIONS	VICTIMS IDENTIFIED	NEW OR AMENDED LEGISLATION
2006	5,808	3,160		21
2007	5,682 (490)	3,427 (326)		28
2008	5,212 (312)	2,983 (104)	30,961	26
2009	5,606 (432)	4,166 (335)	49,105	33
2010	6,017 (607)	3,619 (237)	33,113	17
2011	7,909 (456)	3,969 (278)	42,291 (15,205)	15
2012	7,705 (1,153)	4,746 (518)	46,570 (17,368)	21
2013	9,460 (1,199)	5,776 (470)	44,758 (10,603)	58

※ ()안의 숫자는 노동착취

2) 「콩팥제의 장기 없어.. 장기매매 가능성 대두」(한경TV, 2014. 12. 5), 「장기밀매 괴담 확산」(SBS, 2014. 12. 10)
3) Tier2와 Tier3 등급 사이에 Tier Watch list 등급을 두어, Tier3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국가’ 분류.

4)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s(TVPA)의 Human Trafficking 정의.
5) 美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아이들 전쟁동원(Child soldiers), 원주민 대상 착취(Indigenous person trafficking) 등 좀 더 세분하여 폭넓게 접근하고 있음.

특히, 2014년 보고서에서 무게감 있게 조명한 ‘불법 장기매매(illegal organ trade)’ 실태와 악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14,000건 이상의 합법적인 장기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장, 간, 심장 등 국제적 수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이들 수술의 1/3 가량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 장기의 부족으로 인해 일명 ‘Red-Market’이라고 불리는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적인 장기매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박한 입장에 있는 공급자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체장기를 떼이고 질병만 얻은 채 다시 공박한 입장에 처하는 악순환으로,⁶⁾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美 국무부 보고서 「수룩 사진」



여성 감금 성매매업소 장기 적출 여성의 상처

● 한국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 연속 1등급(Tier 1)⁷⁾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13년 4월 형법 개정⁸⁾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3년 주기의 성매매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인신매매 예방 각종 캠페인 및

상담원 교육 등이 우수 사례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강제적인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근원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중국·동남아시아 등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강제 노동과 매춘에 종속되는 상황과 함께 한국 여성들의 빚 등으로 인한 미국·호주·일본 등으로의 해외 및 국내 성매매 종속 실태를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국가들에 있어 여성·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자라는 사실도 빠짐없이 열거하였다.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 개정된 인신매매 형법 조항을 토대로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수사·기소 및 유죄판결을 위한 노력 입증 △ 증가하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조치 강화 △ 성 노동 착취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율 및 재판의 합의를 감소 노력 △ 이주노동자, 성매매로 검거된 여성 등 취약 계층 중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공식적 피해자 확인 시스템 개발 및 시행 △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강제노동 등 가해자 조사 및 기소⁹⁾ △ 개정된 형법조항에 따른 기소와 유죄확정을 위한 자료수집 시스템 시행 △ 성매매 실태조사와 더불어, 노동착취 실태 조사 및 포괄적인 연구 실시 등이었다.

미국정부 보고서에 대해 부정적인 비평을 하는 인터넷 의견도 있지만, ‘부정만 할 수는 없는 현실 지적’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비록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장기매매 피담과 같은 실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은 없지만,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법집행력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주력할 필요와 가치는 분명히 있으며, ‘인신매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에 시사 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PSI](#)

6) 인도 남부 ‘쓰나미 니가르’ 지역에서는 하루 \$1 이하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여성이 생계를 위해 장기를 파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당초 약속했던 금액의 1/3 수준인 \$1000(110만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대부분 수술 후 회복비용으로 사용됨.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스콧 카니, 2014.
 7) 2001년 美 국무부 보고서 발간 첫해에는 한국이 3등급(Tier 3)으로 평가된 바 있음
 8)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의 죄’를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개정하여 단순히 사람을 매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매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국외 이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기타 성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9) 2011년 4월부터 뉴질랜드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강제노동, 무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혐의 제기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찰의 치안활동 강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미 선

새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경찰의 치안활동으로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근절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등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관을 대폭 증원시키고, 전담기구인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치안인프라를 구축해왔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11.20 시행). 그리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정경찰과 우정벨,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경찰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여성 및 아동을 중심으로 치안력을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치안시책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2호 3항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2013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7%이고, UN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 이후에는 초고령화 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통계청, 2009). 이처럼 노인의 인구 증가는 각종 범죄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범죄 피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검찰청(2000-2013)자료에서도 60세 이상 노인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은 5.2%이었지만 2013년은 9.8%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앞으로의 치안정책도 고령화에 맞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2)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총 2,511,159명으로 총인구 대비 4.9%에 불과하지만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장애인은 일반인들에 비해 자기 방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피해자 중에서도 장애인의 범죄 피해를 공시하는 자료가 없어 정확한 수치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금융사기, 보호시설에서의 폭행 및 학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10년 321건, '12년 494건, '13년 852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매체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치안활동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안전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장애인 보호에 대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이미 많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치안서비스는 제공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순찰, 1노(老)1경(警)제 운영(경로당 1개소에 경찰관 1명이 담당하여 범죄 예방 활동), 노인·장애인 상대 사기범죄 증가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D/B관리 및 사전지문등록제, 독거노인 특별관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각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범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회성이거나 사회적 이목을 이끌기 위한 이벤트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안서비스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며, 또한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한 것처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체계 하에 노인 및 장애인의 치안활동 지침서를 마련하여 모든 장애인과 노인이 평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치안활동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국의 노인·장애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찾아가는 치안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에 의무적으로 방문(월 1회)하여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범죄예방 교실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필요시 언제든지 경찰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다. 경찰력을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비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9월 의령경찰서(경남지방경찰청)는 홈페이지에 ‘원스톱 화상수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으로 필요시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경찰관, 장애인, 통역사간의 영상대화를 통해 범죄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효과성이 지속될 경우 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옹달샘 보듬이’ 활용방안



제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경위 이용호

최근의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온 국민에게 확산되었다.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각 기관 등에서 긴요하게 제시해온 정책들이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또한, 여전히 일부 심각한 폭행이나 괴롭힘(왕따)을 당하는 피해 학생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들은 경찰, 교사, 군인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해 왔다. 애초 취지와 달리 배움터지킴이나 학교보안관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술선하여 이들의 훈육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간혹 세대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양식과 행동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외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내에 배치되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필자는 나날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이 없나 고심하고 주변 청소년들을 만나 해결책에 대해 의논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마련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고민을 해결 점으로 고심해 보았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범위에 따른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추진해 보고

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병무청 공익근무요원(2014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안관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학교폭력전수조사자료 및 예방대책, 제주도내 야간학부(과) 여학생 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회신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교육부 산하 각 교육청 소속 학교 중 학교폭력 위험수위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4대 사회악 근절 목표 중 하나인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안은 전국 경찰, 교육부 및 교육청, 행정기관, 국방부 및 지방병무청, 학교동문회 등이 참여하여 해당 학교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가칭 “옹달샘 보듬이” 등을 선정하여 모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 내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나 학교보안관이 교내 학생과의 유대를 형성하는데 장점이 있으며, 모교의 후배들을 선도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 교육부 및

교육청, 행정기관, 국방부 및 지방병무청, 지방의회, 학교동문회 등이 참여하여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복무 할 예정인 자 등을 대상으로 가칭 “옹달샘 보듬이” 선정 모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교육청은 관내 대학 총·학장 등과 사전협의하여 초·중·고교 중 여학교 및 남·여공학 교에 배치될 야간부여학생 중 해당 모교 졸업생 중에 선행이 바른 학생들을 “옹달샘 보듬이”로 선발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를 충당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관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고, ‘옹달샘 메아리함’을 설치하여 피해학생이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메아리를 울리 수 있는 함을 설치 운영자는 것이다.

특히, “옹달샘 보듬이”들이 배치되어 활동하는 장소가 모교인 점에서 학교 환경 등 지리감에 익숙하여 교내 곳곳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장소를 순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내에 불량자 출입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해 쉽게 인지 및 적발하고 제압할 수 있어 폭넓은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졸업 후 사회생활의 밑거름 중 하나인 동문회 활동을 통해서도 “옹달샘 보듬이”로 선정된 선배와 재학생인 후배들 사이에 이뤄지는 공감대와 유대감을 통해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옹달샘 보듬이”를 우선 배치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이데 대한 효과성을 검토해 보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들 가운데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옹달샘 보듬이” 선발 및 “옹달샘

메아리함” 등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본다.

※ “옹달샘 보듬이” 의미

옹달샘은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친숙한 노래 제목(외국 곡, 윤석중 작사)으로,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 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1절)”와 같이 맑고 깨끗한 옹달샘을 보고 세수 하면 물이 더럽힐까 걱정되어 물만 먹고 갈 정도로, 때가 묻지 않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비유한 것이고,

보듬이란, 순순한 우리말 “보듬다”라는 뜻의 동사와, “이를 행하는 사람”의 합성어로 “친숙하고 때 묻지 않은 자연적 환경의 학교생활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PSI](#)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일선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찰관 중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는 학위논문 1부를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동향’에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한 원고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견

□ 보내실 곳

- e-mail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강소영

일본 경찰정책연구센터와 도쿄 토미사카 경찰서 방문기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권태형

치안정책연구소 소장과 연구관 등은 2014년 11월 5~6일 동안 일본 경찰정책연구센터와 도쿄 토미사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최하였는데, 필자가 기조강연자 명단을 보니 낮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

경찰대학교 경찰정책연구센터

일본 경찰대학교는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부속된 기관이다.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의 상급간부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경찰에 관한 학술 연수를 관장한다.

경찰정책연구센터(Police Policy Research Center, 소장 경시감警視監¹⁾ Shinro Sasaki)는 1996년 경찰대학교에 설치되었다. 다양한 치안분야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제언을 실시하는 등, 일본경찰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직원은 15명으로, 모두 경찰관 신분이다. 우리 치안정책연구소와 2006년 12월에 교류협력을 맺었었다. 경찰정책연구센터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포럼 개최

경찰정책연구센터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 일본 국내외 연구자·실무가를 초빙하여 사회안전 등에 관한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미디어 사회에서의 경찰의 정보제공-사건검거 등으로 이어지는 시민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향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일본 약물대책의 현재와 미래-탈법약물의 위협에의 대처에 관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 교수·현직경찰관을 초빙한 포럼도 개

● 대학관계자와 공동연구 활동

게이오대 대학원 법학연구과와 테러 등 각종 치안사안의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헌법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조화하여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와 고령자범죄의 대책과 예방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고, 포럼 개최 및 보고서 간행을 실시했다.

향후 일본에서의 범죄대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앞으로의 안전·안심 연구회’를 설립하였고, 그 성과가 범죄대책에 관한 제언으로서 취합되었다.

● 대학·대학원에서 강의 실시

경찰정책에 관한 연구발전 및 보급을 위해 여러 대학·대학원에 경찰정책연구센터 직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사회안전정책론’, ‘시민생활의 자유와 안전’, ‘조직·기업의 부정활동과 법’, ‘형사학’, ‘경찰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 국제적 학술교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일본경찰에 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국제경찰간부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범죄정세와 특수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발표를 실시하는 등, 미국 범죄학회와 유럽 범죄학회 등

1) 우리나라 경찰계급 중 치안정감에 해당

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 치안정책연구소 및 프랑스 고등치안·사법연구소, 프랑스 툴즈 제1 사회과학대학 경찰학 연구센터,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안전·사회센터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 주요 연구주제

최근 일본에서는 ‘약물범죄’와 ‘스토커 범죄’가 문제되고 있다며, 경찰정책연구센터는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약물범죄’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로서 범망을 피해가는 범죄이다. 위법약물의 주성분만 규정하여 처벌하는 일본 법규 특성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스토커 범죄’는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 현재는 경찰이 일차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문턱이 높은 한편, 경찰 외에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 ‘스토킹’이 범죄가 되기 전에 경찰에서 개입하는 여부 등과 범무성·후생성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치안정책연구소 방문단은 한국 경범죄처벌법의 스토킹(‘지속적 괴롭힘’)과 정보통신망법상 스토킹 처벌조항(제44조의7 제1항), 그리고 스토킹 관련 한국 국회의 입법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방문단과 경찰정책연구센터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질문하면서 상대방 나라의 치안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었다.



도쿄 토미사카 경찰서

토미사카(富坂) 경찰서(서장 경시²⁾ Yamada Kenzi)는 도쿄도 분쿄구(東京都 文京区)를 관할한다. 분쿄구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관내에는 6개의 코반(交番)이 있다.

<표 1> 토미사카 경찰서(富坂 警察署) 층별 배치

6층	도장(道場)
5층	강당 회의실 형사조직범죄대책
4층	경무과 면회수부(面会受付) 형사조직범죄대책과
3층	생활안전과 방범계 보안계 생활안전상담 소년계 교통조사계 교통집행계
2층	수부(受付) 회계계 서장실 경무과 경무계 교통과 교통과분실
1층	경비계

<그림 1> 토미사카 경찰서 수부(受付:접수대)



● 코반(交番:KOBAN)

코반은 일본 경찰서의 하부기관으로 24시간 열려있는 도시지역 생활안전센터이다. 토미사카 경찰서 소속 코반은 순사부장(巡查部長, 경사에 해당) 이하 경찰관 2~3명이 4교대(일근, 일근, 숙직, 비번 순환근무) 체제로 근무하는데, 경부보(警部補, 경위에 해당)가 근무하는 코반도 한 곳이 있다.

코반 소내에는 상담원이 있다. 퇴직 경찰관이 상담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코반 경비근

2) 우리나라 경찰계급 중 경정에 해당

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코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찰활동을 한다.

- **재소활동**(在所活動): 민원상담, 유실물 접수, 피해신고, 지리안내 등을 한다.
- **소외활동**(所外活動): 순찰, 110번 신고 출동, 불심검문 활동 등을 한다.
- **순회연락**(巡回連絡): 일반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하여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다. 순회연락을 통해 일반인과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낮에만 실시한다. 순회연락카드에는 가족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재해사건 등에 활용한다. 순회연락을 통해 특수사기(보이스피싱) 방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치안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한다.

순회연락에 대해 토미사카 경찰관은 “일본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한다”라고 하였다.

<그림 2>는 도쿄 유명 관광지에 있는 코반의 모습이다. 퇴직한 경찰관으로 보이는 나이 든 사람이 코반 앞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잠시도 쉴 틈 없이 사람들이 계속 코반에 와서 지리를 물어보았다.

<그림 2> 도쿄 카미나리몬 코반(雷門 交番)



<그림 3>은 코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 시 타는 자전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신사용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다. 앞바퀴 포크 좌우에는 투명한 원통이 달려있는데, 여기에 홍보깃발을 꽂는 것 같았다.

<그림 3> 일본경찰 순찰자전거



● **코반 근무경찰 장비**

토미사카 경찰서는 코반 근무 경찰이 착용하는 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림 4>는 방검조끼이다. 이 방검조끼는 가벼운 티타늄 소재 금속판을 조끼에 넣어서 몸을 보호한다. 옆구리에도 티타늄 판을 넣어 보호할 수 있다.

<그림 4> 일본경찰 방검조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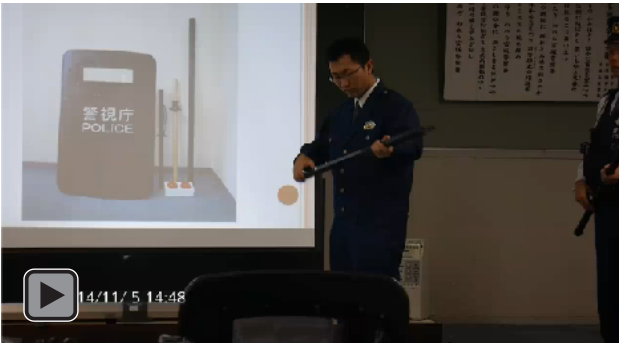


※화면 클릭 시 동영상 재생(컴퓨터 환경에 따라 재생이 안 될 수 있음)

<그림 5>는 사스마타(さすまた)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스마타는 긴 막대 끝에 U자 모양의 쇠를 꽂은 무기로, 에도(江戸) 시대에 범인이나 난폭한 사람의 목을 눌러 잡는데 썼던 전통 무기이다.

일본 경찰은 사스마타를 2단 금속봉으로 개량하였는데, 버튼을 누르면 금속봉 속에서 Y자 모양으로 금속막대가 펼쳐 나온다. 범인을 때리는 것보다 밀면서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림 5> 사스마타(さすまた) 사용방법



*화면 클릭 시 동영상 재생(컴퓨터 환경에 따라 재생이 안 될 수 있음)

<그림 6>은 코반 근무경찰의 통신장비이다. 왼쪽은 무전기, 가운데는 경시청 110번 전용 단말기, 오른쪽은 B폰³⁾이라고 하는 경찰 내부망 휴대단말기이다. 일본경찰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신 B폰을 사용하는데, 용의자 영상 등을 도쿄 전 경찰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 B폰은 화면이 작고 성능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화면이 작고 해상도가 낮아서 수배자 사진 등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필자의 질문에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되니 괜찮다”라고 하였다.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경찰이 자랑스러웠다.

<그림 6> 일본경찰 통신장비



● 교통사고 대책

토미사카 경찰서 교통과장이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대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선

3) 단말기 전원을 켤 때 화면에 ‘NTT docomo for Business’라고 나온다. NTT docomo는 일본 이동통신회사이다.

유도판 설치, 장애물 제거, 각종 노면표지 보완 등을 통해 교통사고 재발위험을 낮추는 토미사카 경찰의 노력이 인상 깊었다.

● 교통안전 교육

토미사카 경찰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7>은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상황을 실제로 보여주어 사고 시 공포감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다.

<그림 7>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재현



<그림 8>은 자동차 충돌 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이다. 탑차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림 8> 자동차 충돌 시 탑승자 충격 체험기



토미사카 경찰서는 이 외에도 직접 시민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PSI](#)

도움: 前)일본 경찰청 연락관 경위 박한솔
치안정책연구소 경위 백병철

연구소 소식 및 연구관 동정

연구소 소식

◆ 「치안전망 2015」 발간·배포

연구소는 2015년의 치안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5」를 발간하였다.

「치안전망 2015」는 특집 ‘재해·재난 전망’을 포함하여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분야별 치안전망’, ‘경찰의 대응’ 등 4장(390쪽)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경찰관서, 중앙행정부처, 경찰관련 학회·학과 등에 2000부가 배포되었으며,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일본 경찰정책연구센터와 도쿄 토미사카 경찰서 방문·시찰

치안정책연구소장과 연구관 등 8명은 11월 5~6일 동안 일본 경찰정책연구센터와 도쿄 토미사카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연구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치안정책연구활동과 일본 일선 경찰서의 치안활동, 교통안전활동, 경찰장비 등을 시찰하였다(치안정책리뷰 이번 호의 방문기 참조).



◆ 학술세미나 개최

11월 14일(금) 치안정책연구소는 경기대학교 범죄과학연구소와 함께 ‘안전사회를 위한 예방치안의 강화’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스리랑카 법무부 차관 방문

12월 1일(월) 스리랑카 ‘루완 찬드라’ 법무부 차관 등 7명은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연구소와 방문단은 한·스리랑카 양국 간 치안정책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소 동계 워크숍 개최

연구소는 12월 11~12일 전북 부안군 소재 변산대명콘도에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2014년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2015년 연구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발간·배포

연구소는 12월 31일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호를 발간·배포하였다.

이번 「치안정책연구」에는 모두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번	과 제 명	소 속	연구자
1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호남대	오삼광
2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메트로폴리탄 덴버 주립대학	남궁현
3	경찰의 정보격차 실태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4	수사기관의 내사에 관한 연구	원광대	명도현 박호현
5	경찰공무원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술 측정	충남도립대	곽영길
6	경찰공무원의 혁신문화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한대 오산대	박상진 김규식
7	경찰공무원의 감성지능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동대	김성환
8	해양경찰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목포해양대	박주상
9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제도 연구원	송수복
10	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 한남대	양철호 이승철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1월~12월 경찰교육원 「행정관 직무교육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 강소영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11월 14일 치안정책연구소-경기대 범죄과학연구소 주최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하였으며, 11~12월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대상 ‘피해자의 이해’ 강의 및 경찰청 수사국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등재학술지 「한국경찰연구」에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에 “감성지능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소 인사

◆ 제8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양성진 경무관 취임
12월 22일 치안정책연구소장으로 양성진 경무관이 취임하였다. 신임 양성진 소장은 광주 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전남영광경찰서장, 전남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광주 동부경찰서장, 전남 완도경찰서장,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하였다.

◆ 제7대 치안정책연구소장 김학역 경무관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이임하였다.

◆ 김남선 연구관(교통대책 연구실)이 12월 13일자로 퇴직하였다. [PSI](#)



연구소 전경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협의 업무

